

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전문위원의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9. 23.  
한 강 유 역 환 경 청 장

## 한강유역환경청 전문위원 채용공고

### 1. 채용개요 및 전형방법

#### 가. 채용개요

근무지	담당업무	직급/인원	계약 기간
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(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)	화학테러·사고 대응 및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등	화학안전관리위원 “마”또는“라”급 / 1명	2025.10.20.~ 2025.12.31.

※ “가”, “나”, “다” 급에 준하는 경력이 있더라도 “라”급으로 채용

#### 나. 전형방법

##### - 1차 : 서류 전형

-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 서류전형 적합자 모두 면접 기회를 부여하며,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
-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제시된 내용으로 서면심사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

##### - 2차 : 면접 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평가한 후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

※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면접 점수 총합이 6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

#### <평정요소>

- |   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① 직업의식     | ③ 전문지식 응용력 |
| ② 품행 및 성실성 | ④ 창의성, 논리성 |



- 최종 합격자가 채용포기, 부적격자 등으로 탈락될 경우 차 순위자 선발

## 2. 자격요건

###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

구 분	자 격 기 준
화학안전 관리위원 "가"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박사(2년 이상), 석사(11년 이상), 학사(14년 이상)</li><li>• 기술사(2년 이상), 기사(11년 이상), 환경측정분석사(6년)</li><li>•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</li></ul>
화학안전 관리위원 "나"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박사, 석사(8년 이상), 학사(11년 이상)</li><li>• 기술사, 기사(8년 이상), 환경측정분석사(3년)</li><li>•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</li></ul>
화학안전 관리위원 "다"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석사(5년 이상), 학사(8년 이상)</li><li>• 기사(5년 이상), 환경측정분석사</li><li>•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</li></ul>
화학안전 관리위원 "라"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석사(2년 이상), 학사(5년 이상)</li><li>• 기사(2년 이상), 산업기사(6년 이상)</li><li>•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</li></ul>
화학안전 관리위원 "마"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위 "가 내지 라"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할 수 없는 자격·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</li></ul>

※ 우대조건 1. 환경, 화학, 법, 행정 또는 기타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유한 자  
2. 운전 가능한 자, 엑셀 및 전산 업무 가능한 자 또는 장애인, 저소득층, 국가유공자

## 3. 보수 및 근무조건

※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을 따름

### 가. 보수조건

- "라"급 : 2,535,000원 / 월(식대 및 시간 외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)
- "마"급 : 2,224,000원 / 월(식대 및 시간 외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)

※ '25년도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보수기준을 적용한 금액

나. 근무시간 : 주 5일, 1일 8시간(09:00~18:00)

다. 후생복지 : 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 가입 및 관사 지원

라. 근무지 및 근무기간

-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(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30)
- 2025. 10. 20. ~ 2025. 12. 31.

## 4. 채용일정

- 가. 공고 및 접수기간 : 2025. 9. 23. (화) ~ 2025. 9. 29. (월)까지
- 나. 접수방법 :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(접수기간 도착분에 한함)
  - 이메일주소 : enlfzen@korea.kr
- 다.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2025. 10. 2. (목)(합격자 개별 통보)
- 라. 면접심사 : 2025. 10. 13. (월)
- 마. 최종 합격자 발표 : 2025. 10. 16. (목)(합격자 개별 통보)

## 5. 제출서류

- ※ 제출서류는 압축하여 “성명\_생년월일”로 송부 예시) 흥길동\_950101
- ※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서명하여 송부
-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(소정서식 첨부)
- 기본증명서 1부 (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)
- 최종학력증명서 1부
-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(소정서식 첨부)
- 공정채용 확인서 1부(소정서식 첨부)
- 자격·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장애인·저소득층·국가유공자 등 우대조건 증명 서류(해당자에 한함)
-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(공공기관 재직 경력 있을 경우, 소정서식 첨부)

## 6. 유의사항

- 가.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나.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- 다.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전일까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됩니다.
- 라.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하며,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.
- 마. 모집인원과 접수인원이 동일할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.
- 바. 서류 제출 시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 및 압축하여 “성명\_생년월일”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예시) 홍길동\_950101
- 사. 응시원서에 학위, 자격사항, 경험 또는 경력사항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아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(031-470-246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별첨]

## 응시원서

\* 접수번호는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음, 주민등록번호·연락처·e-mail 주소 반드시 기재

근무지	한강유역환경청(시흥소재), '25.10.20.-'25.12.31.		접수번호
<b>1. 인적사항</b>			
성명	(한글)		
현주소			
생년월일		전자우편(e-mail)	
연락처	(본인휴대폰)	(비상연락처)	

<b>2. 학위</b>		
전공분야	학위 취득(예정)일	학위종류

<b>3. 경험 혹은 경력사항</b>		
----------------------	--	--

예) 직무활동, 동아리/동호회, 팀 프로젝트, 연구회, 재능기부 등

구분	소속조직	역할	활동기간	활동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경험 <input type="checkbox"/> 경력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경험 <input type="checkbox"/> 경력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경험 <input type="checkbox"/> 경력				

<b>4. 자격사항</b>		
----------------	--	--

\* 국가기술/전문자격,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.

자격증명	발급기관	취득일자	자격증명	발급기관	취득일자

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5년 월 일

지원자: \_\_\_\_\_ (인)

# 자 기 소 개 서

성 명 : ○ ○ ○

※ 특별한 서식이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(2매 이내)

- 자기소개, 지원하게 된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
- 글씨크기 : 13, 줄간격 160%, 글씨체 : 휴먼명조, 글자색 : 검정

#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사무보조원 채용 응시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자 하오니,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·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▶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

구 분	세부내용
개인정보 수집·이용목적	채용 및 채용관리
개인정보 수집항목	성명, 주소, 연락처, 학력, 생년월일, 경력, 자격증 및 외국어능력 등 채용관련 제반사항 (제출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포함)
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	합격자 : 30년, 불합격자 : 180일
제공 거부에 따른 불이익	채용 절차에 제한이 따름

- ※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 
※ 위 제공사항은 채용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,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     동의하지 않음

## ▶ 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 동의

- ※ 고유식별번호 :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등

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     동의하지 않음

- ◆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.  
◆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
본인은 “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제공 동의서”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,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.

2025. . .

성명 : (서명)

한강유역환경청장 귀하

## 공정채용 확인서

본인은 한강유역환경청 전문위원 지원(채용)에 따라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.

1. 본인은 한강유역환경청 전문위원으로 채용됨에 있어, 채용과 관련하여 환경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 중인 친·인척으로부터 어떠한 정보도 사전에 입수하거나 입수를 위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.
  2. 본인은 한강유역환경청 전문위원으로 채용됨에 있어, 향후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·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 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서약합니다.

2025년 월 일

서약자 : (인)

## 한강유역환경청장 귀하

## 부패방지권의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-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(기간제 포함), 일자리창출사업 근로 지원자 작성용-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(채용, 근로)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1.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-----<해당□/해당없음□>

※ 공직자 : 부패방지권의위법 제2조 제3호

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· 임용

· 교육훈련 · 복무 · 보수 ·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

2. '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'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중, 퇴직후 불문) -----<해당□/해당없음□>

※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의위법 제2조 제4호

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
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· 관리 ·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
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
※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 : 비해당  
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 · 여비 부당수령 : 해당

3-1.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-----  
-----<해당□/해당없음□>

3-2. 위 퇴직일(당연퇴직 · 파면 · 해임일)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-----  
-----<해당□/해당없음□>  
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의위법 제82조 제1항 1호)

4-1.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-----  
-----<해당□/해당없음□>

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여부 -----<해당□/해당없음□>  
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의위법 제82조 제2항)

2025년 월 일

지원자

인